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말소등록	3
말소등록안내	3
개요	3
등록기한	3
구비서류(기본서류 + 추가서류)	3
폐차말소	3
도난말소	3
차령초과말소	4
수출말소	4
수출이행여부신고	4
SOFA말소	4
교육·연구목적으로 말소하는 경우	5
천재지변, 교통사고, 화재 등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	5
제작사의 회수말소	5
멸실인정신청 및 멸실말소	6
멸실인정 대상 자동차	6
멸실인정신청 구비서류	6
멸실말소 구비서류	6
과태료 처분기준	6
관련법령	7

신규등록

변경등록

이전등록

말소등록

말소등록안내

개요

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업무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.

등록기한

-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) 이내
- 수입증지: 1,000원
- 말소등록세: 15,000원
- 말소사실증명서 발급: 1,100원

구비서류(기본서류 + 추가서류)

*유의사항 2006.09.11일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.

🔴 폐차말소

-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
- 자동차등록증
- 폐차인수증명서(폐차업체발행)
- 사업계획변경(대·폐차, 감차)신고수리 공문(영업용차량에 한함)
- 신분증(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)
- 대리인 신청 시: 소유자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) 1부 또는 신분증사본, 위임장(도장날인), 대리인 신분증
- 모든 저당, 가처분,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.
-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
-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

🔴 도난말소

-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
- 자동차등록증
- 도난신고확인서(경찰서발행)
- 신분증(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)
- 대리인 신청 시: 소유자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) 1부 또는 신분증사본, 위임장(도장날인), 대리인 신분증
- 모든 저당, 가처분,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.
-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

-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

◎ 차량초과말소

- 말소등록대상
 - 차량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
 - 차량 10년 이상의 승합, 화물, 특수자동차(경형 및 소형)
 - 차량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(중형 및 대형)
 - 차량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(중형 및 대형)
- 말소등록신청서
- 자동차등록증
- 차량입고확인서(폐차업체발행)
- 자동차번호판2개(앞, 뒤) 및 봉인(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,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)
- 신분증(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)
- 모든 저당, 가처분,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.
-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
-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

◎ 수출말소

- 말소등록신청서
- 자동차등록증
- 차주인감증명서
- 자동차번호판2개(앞, 뒤) 및 봉인(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,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)
- 수출예정사실증명서(INVOICE)
- 통일부장관의 승인서 또는 협력사업자승인(북한수출에 한함)
- 사업계획변경(대·폐차, 감차) 신고수리 공문(영업용차량에 한함)
-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(인감날인), 대리인신분증
- 신분증(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)
- 대리인 신청 시: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, 위임장(도장날인), 대리인 신분증
- 모든 저당, 가처분,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.
-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
-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

수출이행여부신고

수출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 및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수출신고필증,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)를 말소한 관청에 제출 신고.

◎ SOFA말소

- 말소등록신청서
- 양수인(미군)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
- 양도증명서 사본
- 자동차등록증

- 자동차번호판2개(앞, 뒤) 및 봉인(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,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)
- 신분증(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)
- 대리인 신청 시: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, 위임장(도장날인), 대리인 신분증
- 모든 저당, 가처분,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.
-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
-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

◎ 교육·연구 목적으로 말소하는 경우

- 인가받은 학교 및 자동차 시험연구기관에서 교육·연구·시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자동차사고원인 규명 등을 위한 말소등록
- 말소등록신청서
- 인가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: (교육부, 노동부,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서의 인가 사항, 자동차와 관련한 교육·연구 기관임이 증명될 것)
- 자동차등록증
- 자동차번호판2개(앞, 뒤) 및 봉인(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,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)
- 신분증(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)
- 대리인 신청 시: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, 위임장(도장날인), 대리인 신분증
- 모든 저당, 가처분,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.
-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
-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

◎ 천재지변, 교통사고, 화재 등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

- 천재지변, 교통사고, 화재 등의 사유로 그 본래기능을 회복할수 없거나 멸실이 된 경우 말소등록
- 말소등록신청서
- 사고사실증명서
- 자동차등록증
- 자동차번호판2개(앞, 뒤) 및 봉인(멸실된 경우 제외)
- 신분증(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)
- 대리인 신청 시: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, 위임장(도장날인), 대리인 신분증
- 모든 저당, 가처분,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.
-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
-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

◎ 제작사의 회수말소

- 자동차 제작사에서 성능결함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 말소등록
- 말소등록신청서
- 자동차등록증
- 차주 인감증명서
- 제작사 법인인감증명서
- 제작사 자동차회수증명서(법인인감날인)
- 제작사 사용인감계(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)
- 자동차번호판2개(앞, 뒤) 및 봉인(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,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)

(<http://www.gangjin.go.kr>)

- 위임장(제작사 법인인감날인), 대리인 신분증
- 모든 저당, 가처분,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.
-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
-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

◎ 멸실인정신청 및 멸실말소

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 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여부를 심사하여 말소등록하는 제도.

멸실인정 대상 자동차

-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
-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, 화물, 특수자동차(경형 및 소형)
-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(중형 및 대형)
-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(중형 및 대형)

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4년간 법령위반사실(속도위반, 주정차위반 등), 등의 운행사실과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받은 사실이 없어야 멸실인정이 가능하며, 모든 압류, 저당, 가처분이 있어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.

멸실인정신청 구비서류

- 멸실인정신청서
- 멸실증명서류
- 자동차등록원부(갑)1부
- 신분증(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)
- 대리인 신청 시: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, 위임장(도장날인), 대리인 신분증

멸실말소 구비서류

-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
- 자동차등록증
- 멸실사실인정서
- 신분증(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)
- 대리인 신청 시: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, 위임장(도장날인), 대리인 신분증

과태료 처분기준

위반내용	과태료처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폐차말소지연 ▪ 제작사의 반품말소지연 ▪ 영업용자동차 차령초과말소 지연 ▪ 영업용면허.등록.인가.신고 등의 취소로 인한 말소지연 ▪ 멸실말소 지연 	10일 이내 5만원,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(최고50만원)
수출이행여부 신고 지연	10일 이내 5만원,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(최고50만원)

※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사신납부 할 경우 20%가 감경되나 세납 시에는 최고 11%의 가산금이 상수되며 사증사 소유권이전등녹이 제한.

관련법령

자동차관리법 제13조, 자동차등록령 제31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

COPYRIGHT © GANGJIN-GUN. ALL RIGHT
RESERVED.

GANGJIN

Web Contents

